

서울가정법원

제 1 부 (항고)

결 정

사 건 [REDACTED]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청구인, 피항고인 [REDACTED] 남)

주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REDACTED]

국적 미국

대리인 변호사 민지원, 이정하

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담당변호사 정진경

상대방, 항고인 [REDACTED]

주소 용인시 [REDACTED]
[REDACTED]

대리인 변호사 이진만, 이경주, 최보윤

사 건 본 인 [REDACTED]



제1심 심 판 서울가정법원 2021. 6. 23.자 [redacted] 심판

주 문

- 1.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한다.
- 2. 항고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 3. 제1심 심판의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 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을 반환하라.
-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심판의 인용
상대방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결정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 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상대방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0. 14.

재판장

판사

정승원



판사

이미주



판사

김정익



정본입니다.

2021. 10. 19.

서울가정법원

법원사무관 김호랑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